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등록 등의 업무를 종전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 자체 업무로 이관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등의 업무 이관에 필요한 사항과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실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영어과목 대체시험 점수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개정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

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3항)를 「국민연금법」(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직장가입
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
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같은 법 제2장 장
기요양보험과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53조 심사의 청
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 「별정우체국법」(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
조까지의 규정, 제32조부터 제33조의2까지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만 해당) 및 각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으로 규정함.

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시행) 제2조제3
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위임함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노무관리진단의 대상, 실
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등록 업무 등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15조 개정)

개정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
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

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의 접수기관 및 등록증 발급기관을 종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함.

라. 징계사실 통보 절차 명시(안 제20조의12 신설)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함.

마. 회칙의 필수 포함사항 추가(안 제21조 개정)

개정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업노무사 등록·등록취소·폐업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바. 공인노무사회 위탁 업무 변경(안 제26조제1항 개정)

개정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무사의 등록(법 제5조)·등록취소(법 제19조) 및 폐업(제9조)에 관한 업무를 공인노무사회 자체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업무에서 등록, 폐업신고의 수리, 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삭제함.

사. 민감정보 등의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제2항 신설)

개정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6895호, 2020. 1. 29. 공포)에서 공인노

무사의 등록(법 제5조) 및 등록취소(법 제19조)에 관한 업무수행의 주체를 공인노무사회로 규정함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인노무사회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아.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개정)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노동 관계 법령(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자. 영어과목 대체 시험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3 개정)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를 추가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 3)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과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53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5. 「별정우체국법」 (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제32조부터 제33조의2까지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노무관리진단의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이하 이 조에서 “노무관리진단”이라 한다)을 의뢰 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한다. 다만, 공인노무사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무관리진단 대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분석 및 진단하기 위하여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관계자 면접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는 필요한 경우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끝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간신문에”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공인노무사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공인노무사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공인노무사회에”로

한다.

제2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2(징계사실의 통보) 제20조의11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서면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3.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인노무사회는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34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4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7호(중전의 제34호) 중 “제33호”를 “제36호”로 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6조제2항 관련)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일반응시자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P B T : 5 3 0 점 이상 I B T : 7 1 점 이상	P B T : 3 5 2 점 이상 -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 0 0 점 이상	3 5 0 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 7 5 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 시 된 시 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 0 4 점 이상 (2018. 5. 12. 이 후 에 실 시 된 시험)
지텔프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Level	Level

(G-TELP)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2의 65 점 이상	2의 43 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6 2 5 점 이상	3 7 5 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Overall Band Score 4.5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가 있는 응시자를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생략)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연금법」 (사업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과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53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신 설>

해당한다)

5. 「별정우체국법」(같은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제32조부터 제33조의2까지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제2조의2(노무관리진단의 시행)

① 공인노무사는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이하 이 조에서 “노무관리진단”이라 한다)을 의뢰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한다. 다만, 공인노무사는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인노무사는 제1항에 따라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무관리진단 대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분석 및 진단하기 위하여 서류 등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 관계자 면접 등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의

	<u>의뢰를 받아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는 필요한 경우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u>④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끝낸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u>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략)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u>일간신문에</u>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	제15조(직무개시 등록절차) ①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공인노무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 공인노무사회에 -----.

② 공인노무사회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공인노무사회에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2(징계사실의 통보) 제20조의11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당사자, 공인노무사회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서면으로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서면에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칙) -----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 11. (생략) <u><신설></u> 12. (생략)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 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의 수리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 소 4. (생략) ② (생략)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개업노무사 등록,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u>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 호까지와 같음) 13. <u>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제26조(업무 위탁) ① ----- ----- ----- -----. <u><삭제></u> <u><삭제></u> <u><삭제></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 ----- -----
--	---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신 설>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공인노무사회는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39